

<p>업무 수탁자의 합리적 선정 기준과 위탁 취소 등에 대하여는 서울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대한 일반규정인 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내지 제16조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이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서울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동 조례 제6조 내지 제8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은 공공이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기업의 설립취지 등에 비추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p> <p>3. 종합 의견입니다.</p> <p>□ 건설기술관리법 관계법령에 의해 감리전문회사의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 중 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주요시설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치수공사 등에 대한 감리업무의 시행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및 민간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서울시에서 발주한 이들 소규모 건설공사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부조리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건설 관계공무원의 인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업무체계의 확립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세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p> <p>□ 다만, 조별 내용 검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공사 감독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위탁 운영에 따른 재원 추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건설공무원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단계적 감축 운영 등이 업무추진 추이에 따라 반드시 병행하여 검토 및 조치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p> <p>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99. 10. 30)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부실 건설공사의 예방과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p> <p>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p> <p>5. 토론요지 : 없음</p> <p>6. 심사결과 : 원안가결</p>	<p>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p> <p>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p> <p>.....</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 조례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소규모공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100억 미만 공사로써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p> <p>2.“감독업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p> <p>3.“주요시설물공사”라 함은 서울특별시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p> <p>4.“조경공사”라 함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p>
---	---

<p>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 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p> <p>5.“기계설비공사”라 함은 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 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p> <p>6.“치수공사”라 함은 하천 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관련 공사를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소규모공사 감독 업무의 위탁 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4조(업무의 위탁) 소규모공사 중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 는 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1.주요시설물 공사 2.조경공사 3.기계설비 공사 4.치수공사</p> <p>제5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소 규모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 를 지원하여야 한다.</p> <p>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 외에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 위탁에관한조례 제6조 내지 제16조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규 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 용규정 중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기본계획수립에 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p>	<p>1. 심사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00년 6월 10일 회부 ○ 상정일자 : 제1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2000년 7월 3일 상정 의결) <p>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택국장 양감)</p> <p>가.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이 개정('99.4.30)되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건설 교통부훈령)에 의하여 시행하던 아파트 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기준을 시·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제정 하려는 것임. <p>나. 주요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과 수립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반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충분한 녹지공간 의 확보 · 도시경관의 제고 및 균린주구체계의 확 립 · 동선·녹지·공공시설·공급처리체계의 효 율성 극대화 · 일조·통풍·사생활권보호, 공해방지 등 을 고려한 생활환경의 향상 -지구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수립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함. ○ 토지이용계획의 기준을 정함.(안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린주구는 반경이 400미터 이내이고 공 동주택의 계획건설세대수는 1,000세대 내 지 3,000세대를 기준으로 구획하되 지역 특수성이나 주변여건(도로구획, 생활권역,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함. -근린주구 안에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주구중심을 설치하고, 면적은 근린주구면적의 100분의 1 이상 100 분의 5 미만으로 함. -근린주구가 3개소 이상되는 지구에는 주 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1 개소의 지구중심을 설치하고, 면적은 당 해 지구면적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3 미만으로 함. ○ 아파트지구안의 건축물 및 도시계획시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의안 번호</td> <td style="padding: 2px;">605</td> </tr> </table>	의안 번호	605	<p>2000년 7월 일 도시관리위원회</p>
의안 번호	605		